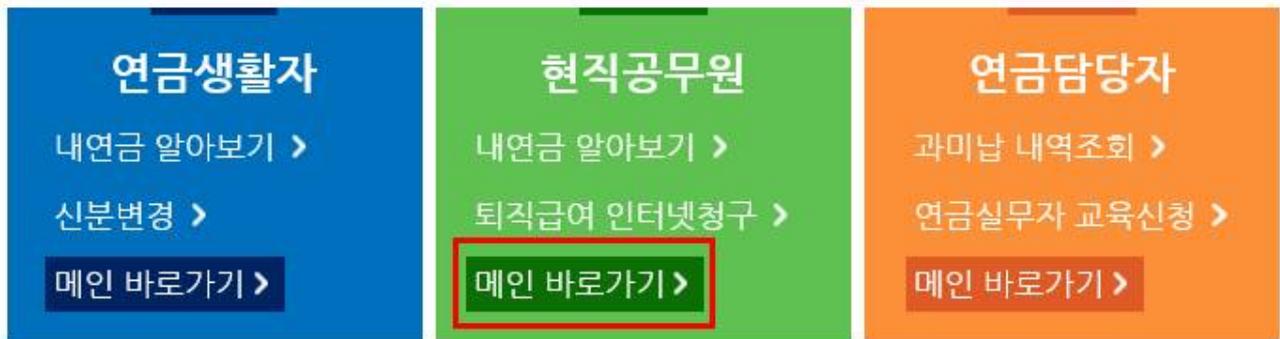


# 특별공급알선 인터넷신청 매뉴얼

[ 인터넷 신청은 해당 공고의 신청일 09:00~17:00에 가능합니다.]

1.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geps.or.kr>)에 접속합니다.
2. 화면 가운데 하단 “현직공무원 메인바로가기”를 클릭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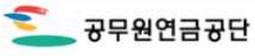
※ 연금수급자의 경우, ‘내연금보기’를 클릭합니다.

3. ‘재직공무원을 위한 내연금 알아보기’에서 ‘주택분양’ 클릭

## 재직공무원을 위한 내연금 알아보기



#### 4.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일반로그인 합니다. (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)




•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정보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.

##### 공인인증서 로그인

공인인증서 로그인

보안센터

공인인증센터

인증서관리   인증서등록방법   사용가능인증서

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입니다.

##### 고객 ID 로그인

아이디

로그인

비밀번호

아이디찾기   비밀번호재발급   신규회원가입

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.

##### 아이핀(i-pin인증) 로그인

아이핀(I-PIN) 로그인

아이핀인증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 없이 회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
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.



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20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.



인증서 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5. 고객지원시스템의 상단 메뉴중 '주택/분양/임대' → '주택분양' → '분양신청서작성' 클릭



상단 메뉴: 재직정보, 퇴직급여안내, 융자사업, 재해보상, **주택/분양/임대**, 민원서류 발급, 연금서식, 연금교육, 내민원

주택/분양/임대 하위 메뉴: 임대주택, 독신자숙소, **주택분양**, 시설(하자)보수

주택분양 하위 메뉴: **분양신청서 작성**, 분양당첨자 확인, 분양계약현황, 개인별 관심지역 관리

#### 6. 분양신청서 작성

○ 분양신청서 작성 화면인쇄   도움말   화면잠금 ×

단지

- 선택 -

분양공고일

■ 무주택서약,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알선대상자 선정처리방법 사전동의

○ 본인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또한 동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서약합니다

○ 무주택기간을 포함한 분양 신청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○ 만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 신청자료와 다르게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첨취소, 계약취소, 주택 기수해자 등록 등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○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공단에서 주택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관리되어, 향후 우리 공단의 임대주택에 영구히 입주하실 수 없으며, 우리 공단의 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알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순위가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.

○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알선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신청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○ 본인은 이 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 또는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공동이용 대상정보 대상정보: 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등본

\*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

위의 '무주택서약,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알선대상자 선정처리방법'에 동의합니다.

인터넷 분양신청 메뉴얼을 숙지하였습니까?

숙지하였습니다.

인터넷분양신청메뉴얼

## 참고

1. 단지 항목에서 “신청 대상 단지명”을 선택
2. 무주택서약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사항에 “동의합니다”를 선택합니다.
3. 착오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분양신청매뉴얼을 필히 숙지하시고 “숙지하였습니다”를 선택합니다.

### 7. 신청자정보사항 입력(인적사항, 직계존속 부양여부, 신청형)

신청자 정보		※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. (직장 주소 등은 안됩니다.)	
신청인주민번호		신청인 성명	
기관코드		기관명	
접수일자		접수번호	
주소	62268		
주택전화번호		직장전화번호	
휴대전화		이메일 주소	
직계존속부양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	3자녀 특별공급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
		신청 주택형	선택

1.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“예”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2. 주소는 **주민등록등본상의 현주소지**를 입력하여 주십시오.  
(아래쪽 칸에는 상세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)
3.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 2개 이상(**휴대폰 번호 및 직장번호** 반드시 입력)을 입력하여 주십시오.
4. 신청 주택형 선택 (**※중복신청 불가, 중복신청 시 자동 취소됨.**)

## 8. 무주택기간 및 재직기간 관련 입력사항

### 무주택기간 및 재직기간

혼인신고일자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만30세(생일) 또는 혼인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		
주택처분일자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입력(변경)된 정보에 대한 최종검토 확정가능 필요		
무주택기간	년	개월	재직기간
	년	개월	

※ 기본무주택기간은 신청자연령 만 30세부터 산정한 기간입니다.  
 ※ 기본무주택기간은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.  
 ※ 주택처분사실 입력  
 - 과거에 주택을 처분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처분일자를 선택하여 주세요.  
 - 여러 주택을 소유 처분하신 경우 최근의 주택처분일자를 선택합니다.  
 - 주택처분일자는 처분하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처분으로 인한 "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"를 의미합니다.  
 (등기원인일자, 즉 처분(매매) 계약일자 등과 무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기준임)  
 (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.

## 참고

- 기본 무주택기간은 **해당 주택의 알선공고일기준**으로 신청자연령 만 30세부터 산정한 기간으로 자동 산정됩니다.  
 ※ 최종 무주택기간은 분양신청서 저장 후 신청서출력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.
- 혼인신고일자는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.  
 ※ 혼인일은 **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**을 입력해 주세요.
-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택처분사실이 있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(건축물대장등본은 처리일)을 입력합니다.**  
 (2회 이상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,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한함.)
- 재직기간은 **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자동산정되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**

## 9. 세대원 및 부양가족 입력, 신청완료

### 부양가족 정보

※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. (직장 주소 등은 안됩니다.)

<input type="checkbox"/>	가족관계	주민번호	성명	구분	부양여부
<input type="checkbox"/>	남편	123456-*****	홍길동	배우자	예
<input type="checkbox"/>	시부	965432-*****	홍상직	세대원	아니오

### 세대원 및 부양가족 정보

※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)은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.  
 -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(처형, 처제, 형부 등), 동거인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
※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여 주세요.

- 본인의 직계존속: 신청 공무원 본인의 부모, 신청 공무원 본인의 조부모 등
- 배우자의 직계존속: 배우자의 부모(장인, 장모, 시부, 시모 등)
- 직계비속: 신청 공무원 본인의 자녀

※ 부양가족 인정 기준(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)

-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 알선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 
 (다만, 유주택자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)
-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조건 추가
- 30세 미만 직계비속(기혼자인 직계비속 제외)
-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간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(기혼자인 직계비속은 제외)

## 참고

1.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)은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.
2. 세대원이 있는 경우 “행추가”를 클릭한 다음 세대원을 입력하여 주십시오.
3. 세대원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여부를 “예”로 선택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.

※ 미 선택으로 인한 점수 누락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- 1)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[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, 직계비속(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,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]으로 한다. 다만,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.
  - 2)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은 신청공무원[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]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.
  - 3) 신청공무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.
4. “저장”을 클릭하면 “신청접수”가 완료됩니다.
  5. 점수확인 및 신청서출력은 저장 후 가능합니다.
  6. “저장(신청접수)”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“취소”를 클릭하여 주십시오.
  7. “저장(신청접수)”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“저장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.  
※ 분양신청서 작성 화면을 나가신 경우, 다시 접속하시어 단지를 선택 하시면 기존에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8. “저장”후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입력사항 및 점수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.